

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574호
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각종규제를 완화·정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용자대상범위 상향조정 및 완화(안 제3조제3항)
- 용자금 대부신청자격 완화(안 제3조제4항)
- 용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자격 확대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행정규제완화 및 현행자치법규 정비

4. 본문 : 붙임참조

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중 “행상노점”을 “행상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“인문계
고등학교 30% 이내, 실업계고등학교 50%이내”를 “ 고등학교는 50%이
내”로 하고 “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”를 삭제한다.

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세대주(이하 “대부 신청자”라 한다)” 를 “세대주 또는 가
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(이하 “대부 신청자”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같은읍면”을 “군관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자의 지정찬조금등 기타수입</p> <p>제3조(용자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(이하“안정자금”이라한다.)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.</p> <p>1.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③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%이내, 실업계고등학교는 50%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(평균 B학점이상)인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(삭제)</p> <p>제3조(용자대상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행상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고등학교는</u></p> <p>50%이내-----</p> <p>----- (삭</p> <p>제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6조(융자금의 대부신청)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(이하 “대부신청자”라 한다.)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.</p>	<p>④ (삭제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융자금대부신청) ①----- -----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(-----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----- 군관 내----- -----.</p>